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기존에 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세부기준들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 따라 하나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의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별표)
- 다.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준용(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나.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해당없음

구미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스사업의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노후화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제1종 보호시설이나 제2종 보호시설 중 공동주택, 주거지역·상업지역이나 취락지구에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 다음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th></tr><tr><td rowspan="6">저장설비 (저장능력)</td><td>10톤 이하</td><td>48m이상</td></tr><tr><td>10톤 초과 20톤 이하</td><td>54m이상</td></tr><tr><td>20톤 초과 30톤 이하</td><td>60m이상</td></tr><tr><td>30톤 초과 40톤 이하</td><td>66m이상</td></tr><tr><td>40톤 초과 200톤 이하</td><td>72m이상</td></tr><tr><td>200톤 초과</td><td>78m이상</td></tr><tr><td colspan="2">충전설비</td><td>48m</td></tr><tr><td colspan="2">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td><td>48m</td></tr><tr><td colspan="3">※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td></tr></table>	구 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	저장설비 (저장능력)	10톤 이하	48m이상	10톤 초과 20톤 이하	54m이상	20톤 초과 30톤 이하	60m이상	30톤 초과 40톤 이하	66m이상	40톤 초과 200톤 이하	72m이상	200톤 초과	78m이상	충전설비		48m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48m	※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구 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																							
	저장설비 (저장능력)	10톤 이하	48m이상																							
		10톤 초과 20톤 이하	54m이상																							
		20톤 초과 30톤 이하	60m이상																							
		30톤 초과 40톤 이하	66m이상																							
		40톤 초과 200톤 이하	72m이상																							
		200톤 초과	78m이상																							
	충전설비		48m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48m																								
※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고압가스 제조사업 및 저장소	독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에 한정한다.(단, 공공의 상·하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 면이 8m 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현황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무실 면적 : 18㎡ 이상 - 주차장 면적 : 23㎡ 이상 - 용기보관실 면적 : 38㎡ 이상(단, 고압가스의 경우, 산소·가연성 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20㎡ 이상의 면적으로 구분하여 설치) 3. 고압가스의 저장설비 중 보관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용적이 300 m³(액화가스는 3톤)을 넘는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2배로 한다.																									

관계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①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략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방지
와 재해발생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
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
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
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
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관 실·과		신산업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김 창 열
	담 당	김 정 오
	담 당 자	김 태 오 (480-6192)